

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기획평가위원회 세부지침

제정 2024. 08. 08

제1조 (목적) 본 지침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기획평가위원회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운영 체계 (1단계~6단계)의 구체적인 절차와 부서별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1단계: 운영계획 및 사업예산 도출 / 1월~2월)

- ① 치과대학 운영위원회, 행정실, 교육지원실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(VISION 2030 등)과 연계하여 당해 연도 주요 업무 운영계획(안) 및 단과대학 예산 편성안을 도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계획(안) 도출 시 교수·직원·학생·동문 등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인증평가 최종 논평서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분석하여 당해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3조 (2단계: 최종 심의 및 성과지표 확정 / 2월)

- ① 위원장은 2월 중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연간 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한다.
- ② 위원회는 치의학교육 인증평가 기준 및 대학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핵심 성과지표(KPI)를 최종 심의·확정한다.
- ③ 제2조에 따른 심의 시 필요한 경우 학생회장 및 총동창회장 외 외부인사 등 특별위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한다.

제4조 (3단계: 본부 보고 및 대내외 공개/공지 / 2월말~3월초)

- ① 학장은 확정된 치과대학 연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대학 본부(총장단)에 공식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② 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확정된 대외 예산안은 치과대학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- ③ 확정된 연간 운영계획 및 성과지표는 교수회의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학내 구성원에게 공식 공지 한다.

제5조 (4단계: 중간평가 및 모니터링 / 3월~11월)

- ① 치과대학 운영위원회, 행정실 및 부서별 사업 책임자는 연간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.
- ② 중간평가 기간 중 집중 점검해야 할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가. 부서별 사업 예산 집행을 점검
 - 나. 교육환경 개선 과제 진행 상황 모니터링
 - 다. 주요 업무 및 핵심 성과지표(KPI) 중간 진행 상태 점검

제6조 (5단계: 정기 성과평가 / 12월~차년도 1월)

- ① 위원회는 연말 정기 회의를 소집하여 연초에 설정된 성과지표(KPI)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최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.
- ② 정기 성과평가 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인사를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.
- ③ 채택된 성과평가 결과는 차년도 단과대학 예산 계획 수립에 연계하여 반영하여야 한다.

제7조 (6단계: 최종보고 및 환류 / 차년도 2월초)

- ① 학장은 당해 연도 성과평가 결과 및 대학 발전계획 추진 성과를 교수동계연수회에서 전체 교수진에게 최종 보고하고 공유하여야 한다.
- ② 당해 연도 회계 결산 결과는 대학 홈페이지에 공식 공시한다.
- ③ 교수동계연수회 및 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개선사항과 최종 논평은 차년도 1단계(운영계획 수립) 프로세스에 반영하여 대학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한다.